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예고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9. 28.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8. ~ 10. 4.(7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관련조문

의견

2.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라 함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정비사업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법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